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나20766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0.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가소1088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양주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으로 알고, 위 토지를 원고 소유인 양주시 F의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C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 명의로 2017. 7. 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할 경우 허가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토지사용확인서 및 '2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원고가 이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C으로 알았고, C이 아닌 피고가 20,000,000원을 받아갔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가 구체적으로 원고를 어떻게 기망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20,0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사기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구약식)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은 피고가 원고의 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해 놓은 실제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의 기망으로 원고에게 20,0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김천수, 판사 안성민